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의안 번호	18841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제출일자)	심사경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2201134호)	정 부	2024. 6. 28.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제2216720호)	윤준병의원	2026. 2.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 20.)

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규정을 정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사. 수출·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자.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차. 벌칙(안 제24조)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다.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마.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2. “어업활동”이란 연근해어업이나 연근해어업과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및 어선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어업”이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외국어선(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어선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4. “비보고어업”이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외국어선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5. “비규제어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말한다.
6.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가목의 어선(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수산물”이란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전재”(轉載)란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0. “양륙”(揚陸)이란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1. “연근해어업자”란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어획물운반업자”란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이하 “불법어업등”이라 한다)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 불법어업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4.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원 조달
5.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

3.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전국단위 추진계획
4. 시·도 계획 수립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통보·공고·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도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도 세부 시행계획
3.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계획의 수립·변경과 통보·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고 및 이행 사항 등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航行) 또는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한다. 다만,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획실적 및 전채실적의 보고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

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
2.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해구[연근해어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업구역으로서 위도·경도 또는 소해구(小海溝)로 표시되는 구역을 말한다],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3. 예정 양륙항 및 입항 일시
4. 어획물운반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전재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일과 양륙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륙실적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④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으려는 경우 출항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획물운반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
2. 예정 양륙항 및 입항 일시
3. 전재하는 어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
4.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⑥ 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륙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港) 또는 항포구를 수산물의 양륙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포구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연근해어업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의 어선이거나 기상악화·어선 안전상의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양륙검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 장치의 작동,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채실적의 보고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양륙검색”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검사

2. 연근해어업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②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양륙검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양륙검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하는 다음 각 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양륙 또는 전채의 일시 중지

2. 어업감독 공무원이 지정하는 양륙검색 장소로의 이동

④ 어업감독 공무원은 양륙검색을 실시한 결과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어업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어획물의 양륙 금지 및 해당 어선의 일시적 출항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양륙검색의 결과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종류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륙실적의 보고)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물량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양륙장소 및 입항일시

2. 어종별 총어획량(어획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양륙실적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근해어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포함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그 밖에 양륙실적 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양륙실적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이하 “어획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연근해어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이행 여부

2.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이행 여부

3.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과 실제 양륙량의 동일성 여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획확인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어획확인서의 전달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물유통사업자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②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자로부터 양도 받은 수산물을 다른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연근해어업자에게 전달받은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어획확인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산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신청 방법·절차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산물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하

려는 수산물이 어선 국적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 간 협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산물은 불법어업등으로 획득한 수산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수산물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하려는 수산물이 어획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수산기구, 유럽연합 또는 외국정부에서 관리하는 불법어업등의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입 수산물 원산지 국가의 어획증명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연근해어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및 어선의 현황
2.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현황
3.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현황
4.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5. 제14조에 따른 어획확인서의 발급 현황
6. 제16조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발급 현황
7. 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근해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를 명예감시원 명예어업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및 경비의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등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에 필요한 지도·단속, 불법 양륙 및 어획확인서의 불법유통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륙장소·사업장·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의 교육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3.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획실적 및 전채실적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